

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지침 개정(안)

□ 지원 신청 마감일 연장

- (개정사유) '21년 사업 종료 가능성을 감안, 지원 신청 마감일을 11.30일로 정하였으나, '22년 사업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'22.1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 마감일 변경 필요
- (개정안) 지원 신청 마감시기를 예년과 같이 12.15.로 조정하되,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,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(2회차 이후) 및 계절근로자의 고용유지확인서 등은 '22.2.3.까지 제출 가능

현 행(9p, 10p, 35p)	개 정
□ 신청시기: 연 1회('21.1.1.~'21.11.30.) * <u>다만, 일용근로자,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(2회차 이후) 및 계절근로자는 12.15.까지 신청 가능</u> ○ '21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, <u>'21.11.1.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</u> * <u>'21.11.1.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</u> ○ ④-1 C-4(단기 취업)의 경우, ...(후략) - (생략) * <u>'21.12.1. 이후 종료되는 사업은 11.30 근로분까지에 대해 12.15. 이전에 신청</u> ○ ⑤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동거(F-1) 국내 체류자에게, ...(후략) - (생략) * <u>'21.12.1. 이후 종료되는 사업은 11.30 근로분까지에 대해 12.15. 이전에 신청</u>	□ 신청시기: 연 1회('21.1.1.~'21.12.15.) * <u>다만, 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(2회차 이후)의 12월 일용근로 내역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와 계절근로자 신청서는 예외적으로 '22.2.3.까지 제출 가능</u> ○ '21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, <u>'21.12.1.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</u> * <u>'21.12.1.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</u> ○ ④-1 C-4(단기 취업)의 경우, ...(후략) - (현행과 같음) * <u>'21년에 종료되는 사업은 '22.2.3. 이전에 신청</u> ○ ⑤ 코로나19 영향으로 방문동거(F-1) 국내 체류자에게, ...(후략) - (현행과 같음) * <u>'21년에 종료되는 사업은 '22.2.3. 이전에 신청</u>